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66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이언주·오세희·허성무

박지원 • 이병진 • 민병덕

김남희 · 신정훈 · 소병훈

황 희 의원(10인)

제안이유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은 인공지능, 센서, 통신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향상, 물류 효율화,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하여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은 기술개발 수준에 비하여 부처 간 제도의 중첩, 데이터 기반의 실증·평가·인증 인프라 부족 등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의 전략적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체계적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를 둠(안 제7조).
- 라.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 주행모빌리티진흥원을 설립함(안 제8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연구개발,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 용 지원, 시장 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 업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 시 우선 선정,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을 할수 있음(안 제11조).
- 아.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해당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 및 해외진 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체계적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율주행 모빌 리티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자율주행 모빌리티"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모빌리티 수단 또는 모빌리티 서비스 중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
- 2.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이란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개발·제조 ·운행·제공 등을 하거나 이에 필요한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데이터, 자율주행 플랫폼 등을 생산·제공·운영 등을 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4. "자율주행 플랫폼"이란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모빌리티 수단의

- 운행·제어, 모빌리티 서비스의 중개, 데이터의 수집·분석, 관제,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베이 스 및 이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 5.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란 자율주행 기술 및 자율주행 모 빌리티의 연구개발·제조·시험·평가·인증·실증, 창업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물·시설 등이 집적한 구역으로 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 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이에 필요한 재정 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책무를 가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 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기반시설 의 설치 및 민간기업의 유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 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현황 및 미래 수요 예측
- 2.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전략
- 3.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 조성 계획
- 4.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및 국산화 촉진 전략
- 5.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 6.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전략
- 7. 그 밖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점검하여 야 하며, 기술환경의 변화 및 시장 동향과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도별 추진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 2. 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 예산
- 3. 사업별 추진주체 및 협력기관
- 4. 사업별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반영하여 야 한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부처 간 정책ㆍ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3.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시험·인증 기반 확충, 부품·장비·소프트웨어·자율주행 플랫폼 등 핵심품목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4.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수집 · 분석 · 거래 및 유통 체

계 구축에 관한 사항

- 5.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전략에 관한 사항
- 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 7. 규제개선 및 규제특례 부여 등 혁신 촉진 방안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의 설립 등) ①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성과 확산 지원
 - 2.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및 거래 지원
 - 3.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의 창업 및 성장 지원
 -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
 - 5.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기반조성 및 지원

제9조(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반도체, 센서, 통신장치, 소프트웨어, 플랫폼기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이하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이라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 2. 공급망 안정화, 국산화 촉진 및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 3.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의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행정절차 의 간소화 또는 우선 처리를 위한 조치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개발 또는 생산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개발 또는 생산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의 지정 기준, 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실증시험센터, 데이터센터, 교육훈련시설, 공동연구개발시설,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국제협력 거점시설 등의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 2.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실증·시험·평가·인증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 3.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의 행정절차 간소화 또는 우선 처리를 위한 조치
 - 4.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 5.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 6.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지원
 - 7.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의 해외 인증 획득 및 해외 마케팅 등

해외진출 지원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가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세부적인 지원 대상·규모·방식 및 절차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에 입주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에 입주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또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자율 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에 대하여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 2.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 3. 해외진출 촉진 및 판로 개척,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및 금융 지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세부적인 지원 대상·규모·방식 및 절차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자율주행 모빌리티 구매 등 지원)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자율주 행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구매하거 나 임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시범운행 데이터의 제출 및 관리) ①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 의 정책 수립,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검증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 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이하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라 한다)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시범운행 또는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 2.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제조·개발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자율주행 플랫폼의 운영 또는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율주행 운행구간, 주행거리, 운행 횟수 등 운행 이력 정보
- 2. 자율주행 모드와 수동모드 전환 기록, 전환 시점 및 전환 원인
- 3. 사고 발생 시점, 위치, 사고 유형, 피해 정도 및 원인 추정에 관한 정보
- 4. 시스템 오류 및 이상 상황의 발생 이력과 그 원인
- 5. 운전환경 정보(주행시간대, 기상상황, 도로 유형, 통신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6. 그 밖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정책 수립,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검증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를 제출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해당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가진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 제출에 소요되는 자율주행모빌리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거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또는 그 밖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진흥원은 제출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를 수집·보관·관리 및 활용할 때에는 무단 유출·이용 방지,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필요한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 제출의 범위·주기·방법·절차 및 품질기준, 진흥원의 보안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수집·분석·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정책 수립,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검증 및 기술개발 지원 등 공익 적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3조에 따라 제

출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및 유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거래 및 유통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보안 조치, 분쟁의 조정 등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및 유통에 필요한 절차·방법, 수수료의 산정, 품질관리 및 보안 조치,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 제15조(전문인력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 2. 산·학·연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3.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반의 제어·알 고리즘, 보안, 실증·운영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4.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정착 지원
- 5.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을 활용한 전문인력 확보 지원
-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설과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 행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 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협약 체결, 해외 인증 획득 및 해외 실증·시험 지원
 - 2.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표준화에 관한 협력
 - 3. 해외 전문인력 교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4.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및 현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5. 국제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 6. 수출에 필요한 보증 · 보험 또는 자금 대출 등 금융 지원
 - 7. 그 밖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